지로EDI 로그인 개선 안내

최근 공급망 공격 등 고도화된 보안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정보보호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지로업무 자료 송·수신을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기관의 **로그인 방식을 "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"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·시행**하고자 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대상업무 : 지로EDI 서비스 (장표지로,자동이체,대량지급)

2. 로그인 방식 변경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로그인	아이디/패스워드 방식	**아이디/인증서 방식** **· 금융인증서** **· 공동인증서**	아이디/인증서 방식으로만 가능 · 담당자 인증서 등록절차 추가 **· 사업자인증서의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음**
로그인 실패 시 횟수 제한	-	**아이디, 인증서 암호 등 5회 실패 시 로그인 제한**	로그인 제한 시 고객센터를 통해 제한 해제 가능 * 고객센터(1577-5500)

(예시① : 로그인 화면)



(예시② : 담당자 인증서 사전 등록 화면)



* 담당자 인증서 사전등록 시 현재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고, 인증 후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

3. 이용기관 조치사항

□ 사업자인증서 로그인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습니다만, 담당자 개인인증서가 없으실 경우 **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거래은행에서 미리 발급**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□ **담당자 인증서 사전등록은 총 5명까지 등록**이 가능하고, 사전등록 시 금융결제원에 기 등록된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며, 인증 후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

4. 로그인 가능한 인증서 종류

□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*
* Yeskey, 코스콤, 한국정보인증, 한국전자인증 등
○ 담당자 개인인증서 및 사업자인증서 (범용 포함)

5. 시행일

□ 2026년 8월 25일 (화)

6. 관계 규칙

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제5조(접근 권한의 관리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.
②~⑤ (생략)
⑥ 개인정보처리자는 **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**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접근통제) ① (생략)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**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자**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, 보안토큰, 일회용 비밀번호 등 **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**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설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.